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 공연장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91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 공연장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7)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4.

다. 회 부 일 : 2025.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7).

Ⅲ. 검토의견

1.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 공연장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7)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7).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u>내화성의 막</u>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u>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 ----- -----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규격에 따른 <u>내화성의</u> ----- ----- ----- ----- -----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은 프로세니엄 형

는 <u>제외한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u>성 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 항은</u>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u>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 로 하며, 해당 기준----- ----- 의무 에서 제외한다.</u>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 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u>성능기준 등 설치, 비 용 지원 절차 등에----- -----.</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1조의7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화재 시 무대의 화염과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방화막의 구체적 성능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1) 「공연법」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조의7은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좌석 수 1천 석 미만 공연장,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은 공연장, 방화막 작동 공간이 부족한 공연장, 또는 방화막 설치 시 「건축법」상 구조내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연장이 이에 해당됨²⁾.

○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서는 방화막의 세부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방화막은 내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무대와 객석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함³⁾.

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가.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나.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다.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공연장운영자는 영 제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그런데, 현행법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해 무대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좌석 수 1천 석 미만의 공연장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다수의 중·소규모 공연장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공연장은 구조적으로 대피 동선이 협소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화막의 내압성능 등을 규정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는 이러한 KS 규격상의 성능요건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있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화막의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에 부합하도록 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하며,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공연장의 안전 기준을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에서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한정 한 이유는 방화막의 설치 목적과 구조적 실효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임. 프로세니엄 무대는 무대와

객석이 액자형 아치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극장 구조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대 뒤편의 화염과 연기가 관객석으로 직접 확산될 위험이 높음.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화염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가 필수적이며, 실제로 방화막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가 프로세니엄 무대임. 반면, 아레나형·스러스트형·플렉서블형과 같은 개방형 무대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방화막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설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음.

[대표적인 공연장 유형]

구분	프로세니엄 (Proscenium)	아레나 (Arena)	스러스트 (Thrust)	플렉서블 (Flexible)
형태	무대와 객석을 액자형 아치로 구분	무대를 객석이 사방에서 둘러쌈	무대가 객석 쪽으로 돌출, 3면 관람	무대·객석 구성이 자유롭게 변형
특징	전통적 극장 구조, 방화막·커튼 설치 용이	원형극장·체육관 공연 등	프로세니엄+아레나 절충형	블랙박스 극장, 실험적 무대
장점	안정적 시야·음향, 연출 용이	관객과 배우 가깝음, 몰입감	몰입도 향상, 거리감 축소	창의적 연출 가능, 공간 활용 자유
단점	관객과 무대 사이 거리감, 시야 제한	무대장치 제약, 시야 제한	일부 좌석 시야 제한	음향·조명 제약, 대규모 공연 부적합
사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립극장	고대 원형극장, 콘서트 경기장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대학로 소극장, 자유 소극장
이미지				

○ 다만, 개정안은 공연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이지만, 현행법과 달리 시행령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현행법은 모든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의무를 부과하되, 좌석 수·무대 형태·구조적 제약 등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예외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좌석 수 300석 이상 공연장에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를 적용하면서도 구조적 한계나 기술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설치 공간이 부족하거나 방화막 추가로 인해 건축물의 구조내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연장까지 의무가 부과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는 방화막 설치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되, 구체적인 제외 사유나 기술적 한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하되, 방화막에 KS 규격을 명시할 경우 천재질 방화막이 배제되어 강재질의 방화막을 제작하는 특정업체만을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건축구조상 방화막 설치 시 건축 구조물 및 프레임 하중, 가용 설치공간의 제약, 공연장 후무대가 없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방화막이 오히려 무대작업자와

공연자의 위험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제처는 방화막 설치 기준은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규모 공연장까지 의무를 확대하면 설치비용과 공사기간 등 업계 부담이 크므로 준비기간과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의 경우 방화막 의무화보다는 안전요원 배치 강화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공연장 방화막 관련 사업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내용

- 개정공연법 부칙의 소급적용에 따라 '26.5.3.까지 방화막 신설 또는 개보수 필요 공연장 44개소* 중 **32개소** 국립공연장 국비 지원
 - 전국 국·국립공연장 중 1천석 이상인 공연장 60개소 중 ▲ 국고지원 32개소, 국립공연장 및 리모델링 등 자체예산 설치 12개소 ▲ 기타 16개소(방화막 기 설치·성능 확보 7개소, 설치불가 구조 9개소)
- 연차별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시행 계획조사를 통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50% 국고지원) 교부 추진

구분		'24년	'25년	'26년	계
지원개소		5개소	17개소	10개소	32개소
총 지원액		1,020백만원	2,880백만원	2,530백만원	6,430백만원
지자체 구분	경기도 등 6개 지역	1,020백만원	2,880백만원	2,215백만원 (9개소)	6,115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	-	315백만원 (1개소)	315백만원

* '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연도별 설치시기 및 현황(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

'25.09.30. 기준

구분	설치시기(개소)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계	
국고지원	5	17	10	32	-
공연장 자체 예산 설치	2	6	4	12	국립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 등
계	7	23	14	44	
기 설치완료				7	
설치 제외대상				9	설치제외(개방무대)
합 계				60	

참고 2

해외사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 해외사례(23. 4. 11 방화막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명	방화막 설치대상(공연장 규모 및 형태)
독일	무대의 크기가 200 m ² 이상이거나 하부무대가 있는 경우 또는 그리드 높이가 2.5 m 이상인 공연장(대공연장)
오스트리아	무대의 너비는 프로시니엄 폭보다 2배 이상, 무대 깊이는 너비의 3/4 이상, 무대의 높이는 프로시니엄 높이의 2배보다 3 m 이상인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미국	프로시니엄 공연장
프랑스	
호주	무대와 백스테이지 바닥면적이 200 m ² 이상이거나 무대면적이 150m ² 이상, 그리고 상부무대시설(그리드)이 있는 공연장(대공연장)
중국	800 석 이상 공연장

※ 출처 : 독일 집회시설규정(Versammlungsstättenverordnung), 오스트리아 빈 행사장 법, 미국국가표준(ANSI), 프랑스 L type(공연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행정명령(Arrêté), 호주 연방건축코드, 중국 국가표준(GB)

- 독일, 호주의 경우 제도적으로 ‘대공연장’으로 분류된 공연장들이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이며 중국도 8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기준을 적용하는 등 주로 규모가 큰 공연장들이 방화막 설치 대상임

※ 참고) 독일에서 무대 크기 200 m² 이상 공연장 기준은 국내 공연장으로 환산할 경우 약 1020석 규모에 해당하며, 호주는 약 800석에 해당함. 환산방식: 국내 1000석 이상 주요 공연장 27개의 무대 단위면적(m²) 당 객석비율 평균(5.1석)을 곱하여 환산

- 미국의 경우 무대 높이가 15m 이상인 공연장은 의무적으로 프로시니엄을 설치하고 해당 공연장은 의무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특수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여건과 비교가 어려움

- 프랑스는 모든 프로시니엄 형태의 극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나 방화막의 형태나 성능 기준*이 유연하고 느슨하여 설치 시 높이 확보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중 부담도 적음

※ 참고) 프랑스 2007년 2월5일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행정명령(Arrêté)에 의하면 프로시니엄 공연장의 방화막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커튼 형태나 접히는 셔터 형태도 가능) 어떠한 형태라도 60분 동안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소재(국내 '60분 방화문'에 사용되는 소재와 유사)를 사용하면 허용됨(참고: 프랑스 건축규정에서는 일반적인 출입문에 15분 화염 차단이 가능한 내화소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음)